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26회 정례회

# 검 토 보 고 서

2018. 12. 5 (수)

| 검 토 안 건 | 발 의 |
|---|---|
| "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구청장 |

## 복지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이주현)

"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검토보고자 : 전문위원 이주현)

## 1. 회부경위

○ 제출자 : 마포구청장

○ 제출일 : 2018. 11. 19

○ 회부일 : 2018. 11. 20 (의안번호 : 18-111)

## 2. 제출이유

마포구립 체육시설의 이용자가 사용개시일 전 납부한 사용료의 반환을 요청할 경우 납부한 사용료의 전액을 반환하고, 마포구민체육센터 종합체육관의 전용사용료 기준을 구체화하여 구민중심의 체육시설을 운영하기 위함

## 3. 주요내용

○ 일부개정 조례안 제9조(개인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
제2항 제2호 가목중
"100분의 10을 공제 후"를
"전액"으로 한다.

○ 일부개정 조례안 제8조(사용료 등)에 의한 "별표3" "전용사용료의 범위"의 기준을 구체화 함

##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전문체육시설)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전문체육시설)

○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 **규제여부 : 해당사항 없음**

○ **입법예고 : 제출의견 없음**(기간:'18.10.11일~'18.10.31)

○ **부패영향 평가 : 해당사항 없음**

○ **성별 영향분석 평가 : 권고사항 없음**

## 5. 검토의견

○ 이건 일부개정 조례안은 2011.6.9일 최초 제정·공포 되어 현재까지 3회에 걸쳐 개정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 **첫번째로**, 이건 일부개정 조례안의 제9조(개인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 제②항 제2호 가목중 "납부한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공제 후 반환"를 "전액 반환"으로 개정한 이유는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반환일 경우라도 사용 개시일 전이라면 공제없이 전액을 반환한다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주민의 입장에서 합리적인 개정이라고 사료됩니다.

| 현 행 | 개 정 안 |
|---|---|
| 제9조(개인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 | 제9조(개인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 |
| 2.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 반환 | 2. ---------- |
| 가. 사용 개시일 전 : 납부한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공제 후 반환 | 가. ---------- 전액 ---------- |

○ 한편, 서울시 25개구중 "전액반환 한다"는 내용으로 규정된 구가 강남구 등 10개구, 공제후 반환한다는 내용으로 규정된 구가 우리구를 포함 15개구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두번째로**, 이건 조례안 제8조(사용료 등) 제①항의 체육시설 이용자에 대한 사용료의 기준인 "별표3"의 "전용사용료의 범위" 기준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 이것은 "마포구민체육센터"내에 설치된 "종합체육관"의 "사용료 기준"에서 "농구코트 1면을 기준"으로 한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 "마포구민체육센터" 3층에 위치한 "종합체육관"의 면적을 고려하여 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고 사용료를 합리적으로 책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건 일부개정조례안 개정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참고자료

1. 신·구조문 대비표 1매

2.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전문체육시설), 제6조(생활체육시설)

3. 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용 조례(개정전)

**[참 고 자 료 1]**

# 신 · 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제9조(개인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 ① (생 략) | 제9조(개인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 ① (현행과 같음) |
| ② 이용자가 체육시설을 사용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다음과 같이 사용료를 반환한다. | ② ----------<br>----------<br>----------.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 2.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 반환 | 2. ----------<br>-- |
| 가. 사용 개시일 전 : 납부한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공제 후 반환 | 가. ----------<br>- 전액 ---------- |
| 나. (생 략) | 나. (현행과 같음) |
| [별표 3]<br>전용사용료의 범위(제8조 관련) | [별표 3]<br>전용사용료의 범위(제8조 관련) |

(단위 : 원)

| 명칭 | 구분 | 사용료 | | 비고 |
|---|---|---|---|---|
| | | 체육경기 | 일반행사 | |
| 염리생활 체육관 | 종합 체육관 | 55,000 ~ 100,000 | 80,000 ~ 160,000 | ※ 사용료 기준 : 2시간 |
| | 다목적 체육실 | 15,000 ~ 40,000 | 30,000 ~ 60,000 | |
| 마포구민 체육센터 | 종합 체육관 | 100,000 ~ 200,000 | 200,000 ~ 400,000 | ※ 사용료 기준 : 2시간, 농구코트 1면당 |
| | 다목적 소체육관(大) | 30,000 ~ 60,000 | 60,000 ~ 120,000 | ※ 사용료 기준 : 2시간 |
| | 다목적 소체육관(中) | 15,000 ~ 40,000 | 30,000 ~ 60,000 | |
| | 다목적 소체육관(小) | 10,000 ~ 30,000 | 20,000 ~ 40,000 | |
| | 볼링장 | (체육경기 시)<br>평일 : 18,000 ~ 50,000<br>토요일 · 공휴일 : 21,000 ~ 65,000 | | ※ 사용료 기준 : 1 시 간 , 1레인 |
| (생 략) | | | | |

(단위 : 원)

| 명칭 | 구분 | 사용료 | | 비고 |
|---|---|---|---|---|
| | | 체육경기 | 일반행사 | |
| 염리생활 체육관 | 종합 체육관 | 55,000 ~ 100,000 | 80,000 ~ 160,000 | ※ 사용료 기준 : 2시간 |
| | 다목적 체육실 | 15,000 ~ 40,000 | 30,000 ~ 60,000 | |
| 마포구민 체육센터 | 종합 체육관 | 100,000 ~ 200,000 | 200,000 ~ 400,000 | ※ 사용료 기준 : 2시간, 농구코트 1면당 |
| | 다목적 소체육관(大) | 30,000 ~ 60,000 | 60,000 ~ 120,000 | ※ 사용료 기준 : 2시간 |
| | 다목적 소체육관(中) | 15,000 ~ 40,000 | 30,000 ~ 60,000 | |
| | 다목적 소체육관(小) | 10,000 ~ 30,000 | 20,000 ~ 40,000 | |
| | 볼링장 | (체육경기 시)<br>평일 : 18,000 ~ 50,000<br>토요일 · 공휴일 : 21,000 ~ 65,000 | | ※ 사용료 기준 : 1 시 간 , 1레인 |
| (현행과 같음) | | | | |

[참 고 자 료 2]

# 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18. 1. 18] [법률 제14532호, 2017. 1. 17, 타법개정]

문화체육관광부(스포츠산업과) 044-203-3156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을 장려하고, 체육시설업을 건전하게 발전시켜 국민의 건강 증진과 여가 선용(善用)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장 공공체육시설

**제5조(전문체육시설)**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내 · 외 경기대회의 개최와 선수 훈련 등에 필요한 운동장이나 체육관 등 체육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 · 운영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체육관은 체육, 문화 및 청소년 활동 등 필요한 용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의 전부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12. 1. 17.>

**제6조(생활체육시설)**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 · 운영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생활체육시설을 운영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생활체육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이나 기구를 마련하는 등의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의 전부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12. 1. 17.>

# [참 고 자 료 3]

## 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개정전)

[시행 2017. 2. 9.] [서울특별시마포구조례 제1089호, 2017. 2. 9., 일부개정]

마포구 (생활체육과)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체육시설"이란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운영하는 체육시설과 이에 부속되는 설비·비품 등을 말한다.
2. "시설의 사용"이란 이용자가 체육시설을 사용하거나 체육·문화 등의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3. "이용자"란 제5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하고, "사용료"란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개인사용"이란 이용자가 체육시설의 일부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5. "전용사용"이란 이용자가 체육시설의 전체 또는 일정 부분을 전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설치) 이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에 설치·운영하는 체육시설의 명칭 및 그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5.4.16>

제4조(체육시설 관리·운영) ① 체육시설은 구청장이 관리·운영을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5.4.16>

② 구청장은 체육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체육경기대회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구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하며, 공정한 이용기회가 부여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2장 사용허가 및 사용료

제5조(사용허가 신청 및 허가)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 또는 단체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체육시설을 상시 사용하는 이용자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설·운영하기 위하여 회원을 모집하거나 회원권을 발급할 수 있다.

③ 이용자가 사용료를 납입하고, 사용권 등을 교부받은 때에는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5.4.16>

제6조(사용시간) ① 체육시설의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단, 시설에 따라 사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주간 : 06:00 ~ 18:00
2. 야간 : 18:00 ~ 22:00

② 체육시설의 사용료 산정을 위한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4.16>

1. 사용허가 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경기가 종료되었거나 사용을 중지한 경우에는 사용허가 시간의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체육 경기 또는 행사에 관련된 시설물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설치를 시작한 때부터 철거를 완료한 때까지를 사용시간으로 하며, 이 경우 설치와 철거에 소요되는 시간은 주간에 사용하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의 단서 규정에 따라 사용시간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체육시설 또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5.4.16>

제7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구청장은 체육시설 사용허가 시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우선 사용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5.4.16, 2017.2.9>

1. 국가, 서울특별시, 구 및 각급 학교의 경기대회, 행사, 학예활동 등
2. 체육진흥을 위하여 마포구체육회에서 개최하는 각종 경기대회 및 체육행사

제8조(사용료 등) ① 구청장은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이용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하며, 사용료는 원가·물가상승률 및 다른 체육시설의 사용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별표 2부터 별표 4까지의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4.16>

② 제5조제2항에 따라 프로그램을 개설·운영할 때에는 이용자로부터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수강료 등 프로그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5.4.16>

제9조(개인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 ① 이용자는 제8조에서 정한 사용료를 지정한 날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가 체육시설을 사용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다음과 같이 사용료를 반환한다.
1.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가. 사용 개시일 전 : 납부한 사용료 전액 반환
나. 사용 개시일 이후 : 사용료×(허가초일부터 중단일까지의 일수/허가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 후 반환
2.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 반환
가. 사용 개시일 전 : 납부한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공제 후 반환
나. 사용 개시일 이후 : 사용료×(허가초일부터 중단일까지의 일수/허가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에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더한 금액을 공제 후 반환

제10조(전용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 ① 전용사용 신청자는 사용료의 추산액을 미리 납부해야 하며, 사용 허가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정산한다.
② 이용자가 체육시설을 사용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다음과 같이 사용료를 반환한다.
1.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 발생시
가. 사용 개시일 전 : 납부한 사용료 전액 반환
나. 사용 개시일 이후 : 사용료×(허가초일부터 중단일까지의 일수/허가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 후 반환
2. 이용자가 취소 또는 연기하였을 경우에는 요청시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사용료를 반환한다.
가. 사용 개시일 30일 전 : 납부한 사용료의 10분의 8
나. 사용 개시일 20일 전 : 납부한 사용료의 10분의 7
다. 사용 개시일 10일 전 : 납부한 사용료의 10분의 6
라. 사용 개시일 3일 전 : 납부한 사용료의 10분의 5

제11조(사용료의 감면 및 할증)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5.4.16, 2015.11.19, 2017.2.9>
1. 개인사용료의 100분의 50 감면, 이 경우 감면 사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만 적용한다.
가.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
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및 1~3급 장애인과 동반하는 보호자 1명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라.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바. 구에 거주하는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중 만 18세 이하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의 부모와 자녀
2. 전용사용료의 100분의 80 감면
가.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통합체육회가 주관하는 행사
나.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주관하는 행사
다. 삭제 <2017.2.9>
3. 전용사용료 전액 면제 : 국가, 서울특별시, 구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100분의 20 범위에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강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5.4.16>
1. 계절별·시간대별 취약 프로그램 이용자
2. 월 2개 이상 프로그램 이용자
3. 3개월 이상 프로그램을 등록하는 이용자
③ 토요일·공휴일 또는 야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30 범위에서 할증할 수 있다. <개정 2015.4.16>
④ 체육시설의 사용에 관하여 구청장과 협약 등을 한 경우에는 그 협약에 따른다.

제12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① 구청장은 이용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허가를 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사용허가의 조건을 위반하여 사용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이용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하거나 퇴장하게 할 수 있다.
1. 경기 또는 행사의 진행에 지장을 줄 경우
2.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체육시설의 안전관리가 필요한 경우

제13조(이용자 책임) ① 이용자가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동안에 시설물 등을 파손·망실하거나 구조변경 등을 하여 손해가 발행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는 시설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폐기물 등을 수거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원상복구 등을 위한 이용자 부담을 담보하기 위하여 사전에 비용을 예치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4조(이용자의 설비 등) 이용자가 특별한 시설물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설물 등의 설치와 철거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액 이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 제3장 운영의 위탁

제15조(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체육시설의 운영과 관련되는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서울특별시 마포구 시설관리공단 또는 체육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5.4.16>
③ 위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위탁의 연장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4.16>

제16조(수탁기관 선정 기준) ① 구청장은 수탁자를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며, 전문가 등을 포함한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마포구 시설관리공단을 수탁자로 선정할 경우 이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5.4.16>
1.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기구·장비·시설 및 기술수준
2. 위탁사무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3. 재정적 부담능력
4. 책임능력, 공신력
② 수탁자 선정은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하되, 체육시설의 특성상 면허 또는 경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특수성을 감안하여 제한경쟁의 방법으로 선정할 수 있다. <신설 2015.4.16>
③ 제2항에 따른 선정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5.4.16>
④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수탁자는 수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3자에게 재위탁하거나 대리하게 할 수 없다. 다만, 체육시설 안의 세부시설 운영 등에 관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신설 2015.4.16>

제17조(선정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심사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으로 해산한다. <개정 2015.4.16>
② 위원은 다음의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5.4.16>
1. 학계, 법조계, 언론계 등 전문가 : 1~2명
2. 해당분야 전문가 및 주민대표 : 1~2명
3.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 3명
4. 관계 공무원(단, 전체위원의 4분의 1 이하로 한다.)
③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4.16>

제17조의2(위원의 제척·회피·기피) ① 심사대상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위원회의 심사에서 제척된다.
② 심사대상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 본인은 스스로 그 안건의 심사를 회피하여야 한다.
③ 심사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본조신설 2015.4.16]

제18조(시설물 등의 설치) 수탁자는 체육시설의 운영과 관련하여 기존의 시설물 등을 변경하거나 새로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5.4.16>

제19조(운영지원)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위탁한 체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감독)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체육시설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사무소 및 위탁시설 등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필요한 조치

를 명할 수 있다.

제21조(위탁의 취소) ① 구청장은 수탁자가 다음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5.4.16>

1. 수탁자가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2. 수탁자가 수탁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3. 수탁자의 재정상태 악화 등 그 밖의 사유로 체육시설에 대한 수탁관리·운영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수탁자의 사망 또는 수탁법인(단체)이 해산되거나 제3자에게 양도되는 경우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 및 날짜를 취소일 30일 전까지 수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5.4.16>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2011.6.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 마포구 체육시설 관리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운영 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서울특별시 마포구 체육시설 관리 조례」에 따라 위탁운영 중인 시설은 그 위탁기간이 종료되는 날까지 종전의 조례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사용허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서울특별시 마포구 체육시설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 허가받은 이용자에 대하여는 사용허가 기간이 종료한 후부터 변경 기준을 적용한다.

부칙<조례 제989호, 2015.4.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부터 별표 4까지의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1일 이후 시설을 사용하기 위하여 납부하는 사용료부터 적용한다.

제2조(체육시설 운영의 위탁 연장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체육시설 운영의 위탁을 받아 운영 중인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제15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위탁을 최초의 위탁으로 본다.

부칙<조례 제1025호, 2015.11.19>(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② ~ ⑥ 생략

부칙<조례 제1089호, 2017.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